의안번호	2200921
의 뢰 인	조인철의원
회 답 일	2024. 6. 26.
추계번호	24D106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지방교부세율을 19.24%에서 24.24%로 상향 조정할 경우 중앙정부 재원은 2025년 17조 1,216억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96조 9,068억원 감소(연평균 19조 3,814억원)하고 동일한 금액만큼 지방재정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지방재정수입: 2025~2029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평균
지방교부세율 인상 (19.24%→24.24%) (안 제4조)	171,216	183,619	194,026	204,900	215,306	969,068	193,814

주: 국회예산정책처의 중기재정전망을 적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내국세 등 세수변화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교부세의 재원)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의 재원을 다음과 같이 변경 :(현행) 내국세[1] 총액에서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45%를 제외한 금액의 19.24% (개정안) 내국세 총액에서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45%를 제외한 금액의 24.24%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4조(교부세의 재원)	○	—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내국인의 소득이나 거래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며, 본 추계에서는 목적세·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하지 아니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국회예산정책처의 중기재정전망[2]의 수치를 추계에 활용함

○ 국회예산정책처의 중기재정전망에 따라 예상되는 추계기간 동안의 지방교부세 재원[3]은 다음과 같음

- 소방안전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는 개정안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므로 본 추계서에서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만 추계함

[표 2] 국회예산정책처의 중기재정전망에 따른 지방교부세 재원 전망

(단위:억원, 경상가격 기준)

	2025	2026	2027	2028	2029
내국세(①)	3,433,992	3,682,033	3,890,150	4,107,610	4,315,715
개별소비세 담배분×45%(②)	9,667	9,647	9,627	9,608	9,589
내국세에서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45%를 제외한 금액 (③=①−②)	3,424,325	3,672,386	3,880,523	4,098,002	4,306,126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4]의 재원 (④=③*0.1924) (내국세에서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45%를 제외한 금액의 19.24%)	658,840	706,567	746,613	788,456	828,49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지방교부세 추계시 정산액은 고려하지 않음

○ 지방교부세의 재원에는 전년도 정산액[5]이 포함되는데, 현재 시점에서 추계

---

2) 2023~2032년 NABO 중기재정전망(2023.10.31.)

3) 현행법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2.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총액
3.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
4.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5.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6.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3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② 교부세의 종류별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교부세: (제1항제1호의 금액 + 제1항제4호의 정산액) × 100분의 97
2. 특별교부세: (제1항제1호의 금액 + 제1항제4호의 정산액) × 100분의 3
3. 삭제<2014.12.31.>
4. 부동산교부세: 제1항제2호의 금액 + 제1항제5호의 정산액
5. 소방안전교부세: 제1항제3호의 금액 + 제1항제6호의 정산액

4) 내국세에서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45%를 제한 금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통교부세가 97%, 특별교부세가 3%로 나누어 가지므로, 합산한 총액을 제시하였음

5) 예산액과 결산액 차이로 인한 교부세 차액

기간 동안의 전년도 정산액의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정산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

❑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과 법안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전망을 바탕으로 지방교부세 재원의 변동을 추계하면, 개정안에 따라 지방교부세율을 5%p 인상할 경우 중앙정부 재원은 2025년 17조 1,216억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96조 9,068억원 감소하고 동일한 금액만큼 지방재정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추계됨

[표 3] 개정안에 따른 지방재정수입 변화

(단위:억원, 경상가격 기준)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현행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의 재원(A) (내국세에서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45%를 제외한 금액의 19.24%)	658,840	706,567	746,613	788,456	828,499	3,728,974
개정 이후의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의 재원(B) (내국세에서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45%를 제외한 금액의 24.24%)	830,056	890,186	940,639	993,356	1,043,805	4,698,042
지방재정수입 증가분(C=B-A)	171,216	183,619	194,026	204,900	215,306	969,06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Ⅳ.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중기재정전망을 적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내국세 등 세수변화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Ⅴ.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한예슬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한예슬	02-6788-4831	yeseulhan@nabo.go.kr